

의안 번호	1675	【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】 심사보고서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. 11. 6.(금)
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1. 6.(금)
라. 위원회 심사일자
- 1차 : 2020. 12. 7.(월) ※ 조건부 가결
- 2차 : 2020. 12. 15.(화) ※ 번안 제출
마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(안 제4조)
- 지원의 범위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교육 및 홍보 등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,
-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관 련 법 규

「공동주택 지원 조례」

제4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지역 안에 「주택법」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,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립된(실제 입주 포함)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. 다만, 영리목적의 임대주택(사원임대 포함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·고시된 지역안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<개정 2009.8.10><개정 2014.11.3><개정 2015.8.10><개정 2019.6.3>

제5조(지원대상)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.<개정 2009.8.10>

1. 단지안 주도로, 보도, 주차장의 유지·보수<개정 2009.8.10>
2.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·보수 및 준설<개정 2009.8.10>
3.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·보수(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)
4.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
5.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, 경로당 유지·보수
6.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<개정 2009.8.10>
7.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·보수
8. 건물 공용부분(공용계단실, 옥상, 외벽 등)에 대한 유지·관리 및 보수
9.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
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<신설 2015.8.10>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8.5.8.><개정 2018.5.8.>

1.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
2.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지역
3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
4. 소규모 공동주택